

제주더큰내일센터 「더 탐나는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2021년 1차)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는 청년의 가능성을 미래로 연결하고자 하는 제주도 내·외 기업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02. 08.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 광고개요

- (공 고 명) 제주더큰내일센터 「더 탐나는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 (모집대상)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청년(이하 “탐나는인재”)과 실습 및 인턴십을 함께 하고 싶은 제주도 내·외 기업
- (모집기간) 2021. 02. 08.(월) ~ 2021. 02. 25.(목)
- (모집내용) 제주더큰내일센터 「더 탐나는 프로그램」
 - ※ 「더 탐나는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기반형 실습(이하 “실습”)과 실무 기반형 인턴십(이하 “인턴십”)으로 구성되며, 동시참여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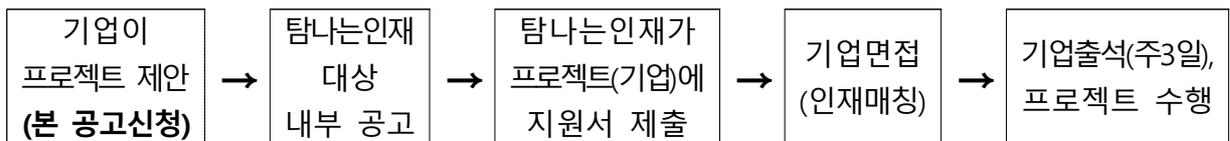
| 분야 | 기간 | 기업 역할 | 탐나는인재 역할 | 센터지원금 | 기업부담금 |
|---------------|--------------------------|------------------|-------------------------------------|---|---|
| 실 습 (주 3일) | 6개월 | 프로젝트 기반 과제 운영 | 교육생 신분으로 기업 현장에서 프로젝트 수행 | 월 150만원 (탐나는인재에 지급) | 없음 |
| 인턴십 (주 5일) | 6개월 (연장 시 최대 12개월) | 실무 기반 인턴십 운영 |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기업 현장에서 실무 수행 | 월 150만원 (기업에 지급) - 급여 先 지급, 지원금 後 정산 | '21년 기준 월 급여 일부 621,350원* 이상 (4대보험 별도) |

* 인턴십 기업부담금 : 인턴십 참여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로계약시점의 당해연도 생활임금수준 이상 월 급여(2021년 기준 2,121,350원)를 참여자에게 先(선)지급해야 하며, 센터는 後(후)정산 지급함(그 외 기간에 따른 퇴직금, 초과수당, 4대 보험 등 기본급을 제외한 부분은 별도 기업이 부담해야 함)

□ 모집분야별 세부내용

1. 실습 프로그램(프로젝트 기반형 실습)

- (참여대상) 제주도 내 소재지에 사업장(본점 혹은 지점)이 등록된 법인 및 개인사업장
- (운영기간) 6개월(주 3일)
- (프로그램 내용) 기업이 설계한 프로젝트 기반형 과제*를 탐나는 인재에게 제안하여, 기업담당자와 함께 수행하는 프로그램
 - * 프로젝트 기반형 과제 : 탐나는인재가 '서포터'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업 현장의 프로젝트
- (희망인원) 기업당 최소 2명이상
 - ※ 단, 지원한 탐나는인재가 1명일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운영 가능
- (탐나는인재 신분) 센터 소속 교육훈련생(근로자 아님)
- (기업 역할) 탐나는인재를 전담지원할 담당자를 배정하고, 함께 기업 프로젝트 수행, 지원 및 관리
 - ※ 향후, 기업과 참여자가 상호협의를 경우, 인턴십(주 5일) 프로그램으로 연계가능(3개월 이상 실습 수행 시점에 인턴십 조기전환 검토 가능)
- (기업 자부담금) 없음
- (운영방식) 실습 프로그램 연계 절차



2. 인턴십 프로그램(실무 기반형 인턴십)

- (참여대상) 도내·외 법인 및 개인사업장(일반과세 사업장)
 - ※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업 제한 기준 필수 참고
- (운영기간) 6개월(주 5일) * 연장 시, 최대 12개월
- (프로그램 내용)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기업 담당자 관리 아래 기업 현장 실무를 수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 (희망인원) 제한없음
- (탐나는인재 신분) 기업 소속 계약직 근로자이자, 센터 소속 교육훈련생

○ (기업 역할) 탐나는인재와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월 급여지급, 기업지원금 정산신청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인턴십 운영

○ (기업 자부담금) `21년 기준 월 621,350원 이상 자부담

- 기업은 탐나는인재에게 근로계약에 명시된 날짜에 매월 급여*를 先(선) 지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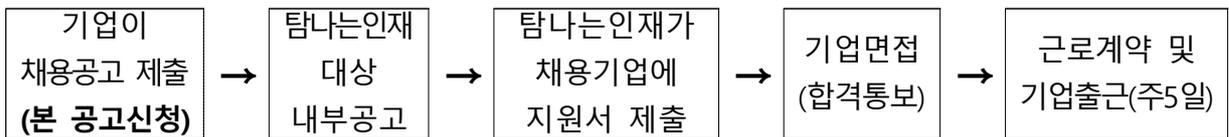
* 월 급여 수준 : 인턴십 참여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로계약시점의 당해연도 생활임금수준 이상 월 급여(2021년 기준 2,121,350원)를 참여자에게 先(선)지급해야 하며, 센터는 後(후)정산 및 지급함

| | | | | |
|--------------|---|----------------|---|-------------------|
| 기업지원금 | + | 기업 자부담금 | = | 월 급여액(기본급) |
| 월 1,500,000원 | | 월 621,350원 이상 | | 2,121,350원 이상 |

단, 기본급을 제외한 매월 고정적, 일률적이지 않은 수당(초과수당, 휴일수당 등) 및 상여금 등 비고정급여 및 4대 보험은 별도 기업이 부담해야 함

○ (운영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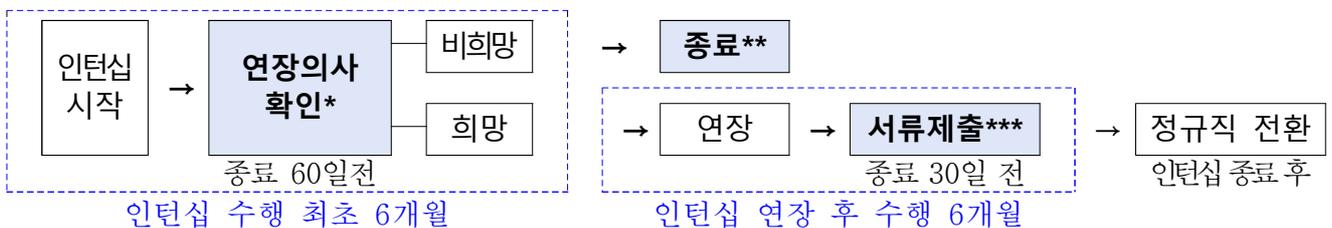
- 인턴십 프로그램 채용절차



- ※ 단, 기업 채용공고는 센터 채용공고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고만 가능
- ※ 기존 실습 프로그램에서 탐나는인재와 인턴십으로 연계되는 경우, 별도 면접절차 생략가능하며, 추가채용도 가능함

- 인턴십 프로그램 연장(추가 6개월)절차 및 연장조건

※ 단, 연장은 최초 인턴십 참여시점에 해당 참여자의 지원 잔여기간이 12개월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 연장의사확인 : 인턴십을 진행하는 기업은 계약종료 60일전에 센터에 추가 6개월 연장의사를 밝혀야 함. 연장 시, 총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음(단, 연장종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 조건)
- ** 종료 : 탐나는인재와 연장을 비희망할 경우, 인턴십은 종료되며, 탐나는인재와 타 기업과의 인턴십 매칭을 위해 조기 종료할 수 있음(이때 종료일자는 합의 하에 정함)
- *** 서류제출 : 연장하는 기업은 인턴십 연장기간 종료 시점에 탐나는인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연장종료 30일전에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센터에 제출해야 함(정규직 전환일자는 인턴십기간 종료 즉시)

□ 참여기업 요건

1. 실습 프로그램(프로젝트 기반형 실습)

- 제주도 내 소재지에 사업장(본점 혹은 지점)이 등록된 법인 및 개인사업장
 - ※ 본사가 도외에 있더라도 제주도 내 지점이 등록된 경우 가능

2. 인턴십 프로그램(실무 기반형 인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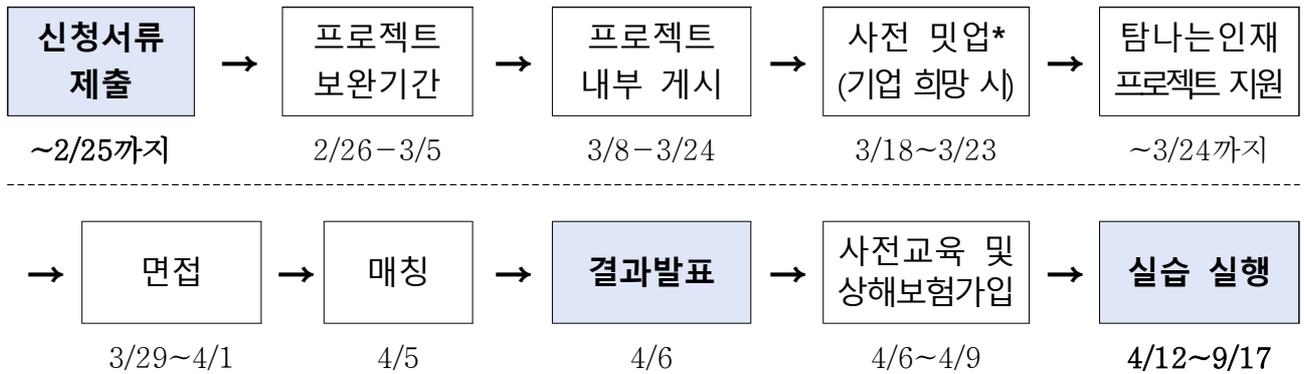
- 도·내외 법인 및 개인사업장(일반과세 사업장)
 - ※ 소재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제한 기업 기준

1. **개인사업장 중 간이과세 사업자**
2. 지원일 기준 4대 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가입 사업장**, 지방세 체납 사업장
 - ※ 단, 제주더큰내일센터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탐나는인재가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일에는 4대 보험이 미가입 상태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타 탐나는인재를 채용한 후에는 즉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3. 지원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고용유지지원금 등)가 실시 중인 사업장
 - ※ 단, 인턴십 채용기준일 이전 고용유지 조치(고용유지지원금 등)가 종료되는 경우, 참여가능
4. 지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 * '인위적 감원'이라 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5. 지원일 현재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6. 부정수급 등(타 보조금 사업 포함)으로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
7. 채용하는 기업의 대표자(고용주)가 탐나는인재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경우
 - ※ 센터가 요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제출
8.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나,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채용 불가
9.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 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사업장
10.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ex.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11.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ex.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 단,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며 외근이 필요한 업무(영업관리, 마케팅 등)는 가능하나 단순히 영업을 위해서 상시 외근만 하는 업종은 지원 불가
12. 기타 사회통념상 탐나는인재가 근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 골프장 잔디관리,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서비스 등 단순노무직종
 - ** 단, 탐나는인재의 진로상 필요하고 연관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가능
1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14. 본 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금지 통보를 받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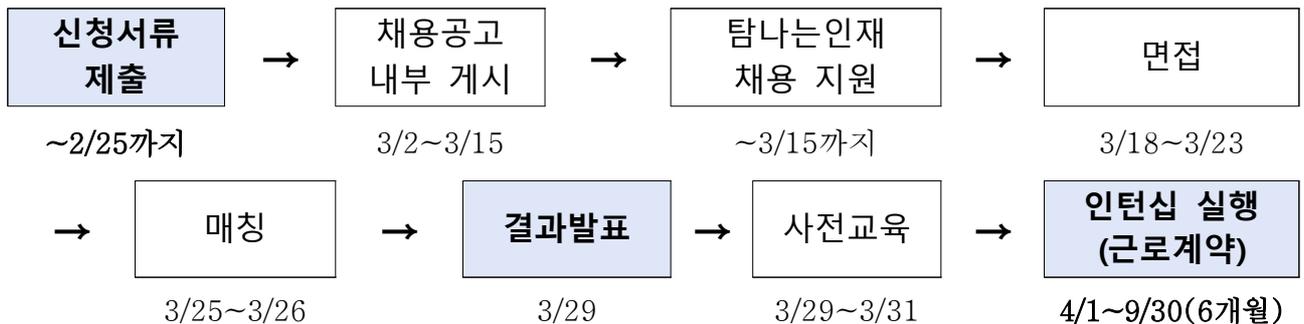
□ 추진일정

1. 실습 프로그램(프로젝트 기반형 실습)



* 사전 밋업 : 탐나는인재가 프로젝트 지원 이전에 프로젝트를 제안한 기업에게 기업 정보 및 프로젝트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장방문 혹은 온라인 문의로 진행됨

2. 인턴십 프로그램(실무 기반형 인턴십)



※ 기존 실습 프로그램(프로젝트 기반형 실습)에서 탐나는인재와 인턴십으로 연계되는 경우, 별도 면접절차는 생략가능하며, 추가채용도 가능함(본 공고 신청서 필수 제출)

□ 신청방법

- (제출기한) 2021. 02. 25.(목) 18:00까지
-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분야별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 ※ 실습과 인턴십 프로그램 동시 신청 가능(기존 참여기업도 가능)
- (제출처) 이메일 : jdnc.pat@gmail.com
- (문의처) 제주더큰내일센터 취창업연계팀(064-720-8931~4, 8914)

○ (제출서류) 서식 별첨 참고

| 구분 | 실습 프로그램 | 인턴십 프로그램 |
|---------------------|--|---|
| (선택) 분야별 제출서류 | (별첨1) 실습 프로그램 제안서 1부 | (별첨2) 채용공고 등록신청서 1부 (별첨3) 자격확인 및 사업장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 공통서류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선택) 기업소개자료(PDF 혹은 영상 등) 1부 * 기업소개자료의 경우, 탐나는인재가 해당기업 지원 시, 참고자료로 제공예정 | |

※ 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신청서를 탐나는기업 등록신청으로 대체함
(단, 분야별 프로그램 신청서 내 기업 정보활용동의 체크 필수)

<끝>

1. 실습 프로그램(프로젝트 기반형 실습)

(1) 신청 관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탐나는기업'에 등록되어 관리됨

(2) 참여기업과 탐나는인재의 관계

- 매칭된 기업은 제주더큰내일센터(이하 "센터")와 탐나는인재와의 3자 협약을 체결함
- 탐나는인재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습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기업은 탐나는인재가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실습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야 함
- 기업은 탐나는인재에게 근로를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3) 실습 기간

- 실습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6개월
- 기업과 탐나는인재가 모두 희망할 시에는 실습 종료 후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수 있음(단, 실습 종료 전 희망 의사를 알려야 함)

(4) 수행조건

- 수행시간 : 주 3회 기업 출석, 주 2회 센터 출석
- 수행내용 : 기업은 제출한 프로젝트맵(제안서) 내용과 다른 프로젝트를 탐나는인재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수행 시간대를 정하거나 프로젝트와 무관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음
- 수행장소 : 참여기업이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여야만 하며, 참여기업(담당자 등)이 관리가 가능한 형태여야 함

※ 항시 상주가 어렵거나, 온라인 형태로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 센터가 승인가능한 범위 내 정기적으로 참여자와 대면 관리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참여자의 출결현황을 출석확인서에 표기하여, 매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함

(5) 안전관련

- 실습 중 발생한 사고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실습 협약기간 이행 범위 내에서 출석한 것으로 보며, 1주일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센터와 기업의 협의 하에 협약 지속 여부 또는 해지를 결정할 수 있음
- 기업은 탐나는인재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위험한 행동 또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요청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 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없음
- 탐나는인재는 실습 수행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습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3자 협약서 및 센터 관리지침에 따름

2. 인턴십 프로그램(실무 기반형 인턴십)

(1) 신청 관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탐나는기업'에 등록되어 관리됨
- 「인턴십 참여기업 제한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음

(2) 참여기업과 탐나는인재의 관계

- 탐나는인재는 채용 시점부터 근로계약기간 동안 채용한 기업(이하 "기업") 소속이 자 제주더큰내일센터(이하 "센터")의 훈련생 신분임
- 기업은 탐나는인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 등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이행해야 함
- 기업은 탐나는인재에 대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함
- 기업은 센터 및 탐나는인재와 3자 협약을 체결해야 함

(3) 센터지원금 및 인턴십 급여지급

- 기업은 지원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월별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탐나는인재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탐나는인재의 급여는 기업이 先지급하고, 분기별로 센터에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가 기업에게 後지급하는 것으로 함

※ 단, 기업 사정에 의해 월별 희망 시 센터와 협의 후 월별로 지원금 신청 가능

※ 기업지원금 지급 신청방법은 진행 시, 해당기업 대상으로 추가 안내 예정

- 급여는 센터지원금(150만원)을 합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로계약시점의 당해연도 생활임금수준* 이상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수준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56호)」에 따라, **2021년 기준 2,121,350원**임. 센터지원금(1,500,000원) + 기업 자부담금(621,350원 이상)**

** 생활임금수준 계산 : 10,150원(2021년 생활임금액) x 209시간(주 40시간 근로자 1개월의 유급근로시간) = 2,121,350원

※ 이때 급여기준은 <기본급> 기준이며,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및 상여금만 포함되며, 매월 비고정적이거나 비일률적인 수당(초과수당, 휴일수당 등) 및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음(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월 급여 산정에서 제외함), 4대 보험 별도 기업 부담

(4) 인턴십 기간(근로계약기간)

- 근로형태 : 계약직
- 근로기간 : 6개월(연장 시 최대 12개월)

※ 단, 최초 6개월 인턴십 종료 60일 전 기업과 탐나는인재는 연장의사를 밝혀야 하며, 연장조건은 연장종료 시점의 정규직 전환임.

※ 6개월 연장하는 경우, 총 12개월간 인턴십을 진행할 수 있음. 단, 연장 시에는 종료 30일 전까지 정규직 근로계약을 센터에 제출해야 함

(5) 안전관련

- 기업은 탐나는인재에 대해 법정 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 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성희롱 등의 일이 발생할 경우 센터에 알려야 함

- 탐나는인재가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탐나는인재의 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지원결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봄

※ 단, 탐나는인재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기업이 아닌 별도의 급여지원을 받거나 업무상 재해 및 부상으로 산재보험 처리되어 급여수령 시 센터지원금은 그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음

(6) 기타 근로조건 준수

-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적용을 원칙으로 함

- 가산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

- 근무장소 :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지 명시

※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는 불가하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의해 공공장소(회사 등)에서 근무가 불가할 시에는 회사 방침에 따른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사전에 센터에 알려야 함

(7) 변경신고

- 기업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등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 전까지 관련서류*를 센터에 제출해야 함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

- 기업의 인수, 합병 등 중대한 변경 시에는 고용 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만 인정

※ 단, 고용관계 유지(고용관계를 맺은 시점), 합병 등의 과정에서 고용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신규고용 절차 등) 유무, 합병이나 인수 후 임금 등 근로조건변동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변경을 인정함

(8) 지원종료

- 기업 또는 탐나는인재가 연장을 비희망하는 경우, 기업은 지원종료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기간 내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턴십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위반사실에 대한 처리는 「근로기준법」과 「센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르며, 센터 동사업 2년 참여 금지함

-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3자 협약서, 「근로기준법」, 「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며 해석 분쟁 발생 시에는 센터 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석함